

※ 바로 잡습니다.

※ 2024년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 (저자 : 배택현) 교재 및 강의 정정사항 안내

교재 및 강의 내용 변경 및 정정

1.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조특법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이 다음과 같이 2024.2.29. 변경

종전규정 :㉠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.

개정규정 :㉠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본다.(2024.02.29 개정)
(부칙:제26조의4 제9항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)

따라서 2023년귀속 법인세 신고핵심실무 교재 및 동영상 강의 내용 중에 신규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계산시 “1년미만 근무자 (신규입사자) 임금 연환산(12개월)”은 삭제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신청서 서식중 평균임금계산중 ㉠임금 계산은 연환산하지 마시고 근무월수의 임금을 실제그대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즉 이번 신고부터 신규입사자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월수와 임금 모두 연환산 없이 실제대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.

2.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수도권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 10%감면특례는 2023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 (교재 321페이지 하단)

배 택 현 세무사 올림